

2018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18. 4. 7.(토) 시행하는 2018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시험일시

시험일자	시험시간	계급	시험구분	채용분야	비고
2018. 4. 7. (토)	10:00~11:40 (100분)	지방 소방사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남·여)	09:20까지 입실 완료
	10:00~11:00 (60분)		경력 경쟁 채용시험	구조(남) 구급(남·여) 구급상황관리 통신(남)	

2. 시험장소

응시분야	임용 기관	응시 번호 및 인원		시험장	
		시작번호~끝 번호	인원	시험장명	주소(전화)
일반 소방	남	경상남도	11990001~11990500	2,306	4개소
			11990501~11991307	500	진주 중학교
		창원시	11100001~11100232	807	진주여자 중학교
	여	경상남도	12990001~12990205	232	진주중앙 중학교
		창원시	12100001~12100016	205	
			12100001~12100016	16	
구조	남	경상남도	13990001~13990073	73	진주제일 중학교
		창원시	13100001~13100054	54	
구급	남	경상남도	14990001~14990163	163	
	여		15990001~15990251	251	
구급상황 관리	-	경상남도	19990001~19990001	1	
통신	남		18990001~18990004	4	

※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8. 5. 3.(목)**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제2차 시험(체력시험) 장소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 : **2018. 5. 3. ~ 5. 17.**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 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및 기타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원서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면지 사용 금지)

마. 점수산출은 전산기기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색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하거나, 답안지 오염·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에도 전산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계획공고문(경상남도 제2018-139호)**에 안내된 가산특전의 종류와 가점비율을 확인하고,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의사상자, 자격·면허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당 기간 내에 등록(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선택과목이 있는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자.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보기>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차.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예고 시간 고지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및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합니다.**
- 파.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거. 시험실에는 신발을 신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각 시험실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너.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러.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머.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 055-211-3563, 3565, 3567~8) 또는 소방행정과(소방행정담당, ☎ 055-211-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7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시험 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